

제294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(2024. 6. 12.)에서 의결된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6월 17일

양구군의회 의장 조 돈 준



양구군의회 규칙 제 29 호

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.

1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
2. 대한민국 및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계획
3. 「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4조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